

■ 내부적 관리기법

- (1) 매칭(Matching)
- ① 외화자금의 현금 유입과 유출을 통화별 및 만기별로 일치(matching)시킴으로써 외화자금흐름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기법
 - ② 수출이나 수입 한쪽만 있는 기업들은 활용할 수 없음
- (2) 상계(Netting) : 기업 간 거래에서 일정기간마다 지불금액과 수취금액을 상계차감한 후 잔액만을 결제하는 방법
- (3) 리딩(Leading) & 래깅(Lagging)
- ① 기업의 본사와 지사 또는 다른 기업에 대해 자금 수급의 결제기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기법
- | 구분 | 외화수취 예정 | 외화지급예정 |
|----------|---------|---------|
| 달러 강세 예상 | lagging | leading |
| 달러 약세 예상 | leading | lagging |
- ② 현실적으로 자금 수급을 무한정 미루거나 당길 수 없음
- (4) 통화 포트폴리오 전략 : 수출입 통화를 달러, 엔화 및 유로화 등으로 통화의 포트폴리오를 구축

■ 환리스크 측정 (VaR의 산출)

- (1) VaR(Value at Risk)의 정의
- ① 정상적인 시작에서 주어진 신뢰수준으로 목표기간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 즉, 통계학적인 리스크 측정치
 - ② 예를 들어, 목표기간 5일, 신뢰수준 95%에서 계산된 포트폴리오의 VaR가 10억원이라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함
 - ㉠ 리스크 요인의 변화에 의해 5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10억원보다 작을 확률이 95%이다.
 - ㉡ 리스크 요인의 변화에 의해 5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10억원보다 클 확률이 5%이다. 여기서 5%를 허용수준이라고 한다.
 - ③ 여기서 신뢰수준은 일반적으로 95% 또는 99%수준으로 설정하여 운영함
 - ④ 측정기간의 경우 금융기관은 주로 일별, 기업의 경우 월별 단위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한다.
- (2) VaR의 계산
- ① $VaR = \text{환위험 노출금액} \times \text{신뢰구간} (1.65 \text{ or } 2.33) \times \text{환율변동성}(\sigma)$
 - ② T일의 $VaR = 1\text{일의 } VaR \times \sqrt{T}$
- (3) 적용
- ① 총외환손실한도 > VaR : 환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음
 - ② 총외환손실한도 < VaR : 해지 필요

■ 선도 vs 선물 (future)

구분	선도	선물
거래장소	장외시장	장내시장(거래소)
거래소 보증	없음	있음
거래조건	거래당사자 필요에 맞춤	표준화
결제	대부분 만기거래	대부분 만기 전 반대매매
유동성	↓	↑

■ 선물환 포인트 산출

- (1) 프리미엄 통화
- ① USD / KRW의 경우 FC인 달러의 이자율이 VC인 원화에 비해 이자율이 낮은 경우
 - ② 고객 선물환 매도 시(bid rate 산출)
 - ㉠ 은행의 포지션은 만기 시 달러 매입 : USD 수령 + KRW 지불
 - ㉡ 이를 위해 현재 현물환 매도→USD 차입 + KRW 예치
 - ㉢ 선물환 포인트 = 선물환율 - 현물환율
- $$= \text{현물환율} \times \frac{(1 + \text{KRW 예금이자율})}{(1 + \text{USD 차입이자율})} - \text{현물환율}$$

- ③ 고객 선물환 매입 시(offer rate 산출)
 - ㉠ 은행의 포지션은 만기 시 달러 매도 : USD 지불 + KRW 수령
 - ㉡ 이를 위해 현재 현물환 매입→KRW 차입 + USD 예치
 - ㉢ 선물환 포인트 = 선물환율 - 현물환율
- $$= \text{현물환율} \times \frac{(1 + \text{KRW 예금이자율})}{(1 + \text{USD 차입이자율})} - \text{현물환율}$$
- (2) 디스카운트 통화
- ① USD/JPY의 경우 FC인 달러의 이자율이 VC인 엔화에 비해 이자율이 높은 경우
 - ② 계산과정은 프리미엄의 경우와 동일(but 선물환포인트의 값이 음수)

■ 이자율스와프와 통화스와프의 비교

- ①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교환(vs 금리스와프)
- ② 통화스와프는 초기와 만기에 원금 교환이 발생(VS 금리스와프)
- ③ 거래시점의 환율 = 만기원금 교환에 적용되는 환율(VS 외환스와프)
- ④ 통화스와프의 만기 현금흐름과 이자 교환 현금흐름의 방향은 동일
- ⑤ 통화스와프는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교환되므로 만기원금에 대한 환율변동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큼

■ 옵션 가격결정요인

변수	변수의 방향	프리미엄의 방향	
		콜옵션	풋옵션
기초자산	기초자산가격 ↑	Call ↑	Put ↓
행사가격	행사가격 ↑	Call ↓	Put ↑
잔존만기	잔존기간 ↑	Call ↑	Put ↑
기초자산의 변동성	변동성 ↑	Call ↑	Put ↑
무위험이자율	무위험이자율 ↑	Call ↑	Put ↓
배당	배당 ↑	Call ↓	Put ↑

■ 변동성 전략 - 변동성 확대 예상

스트래들 (Straddle) 매수	만기일과 행사가격이 동일한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수 : 이익은 무제한, 손실은 프리미엄 크기로 제한
스트랭글 (Strangle) 매수	만기가 동일한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구성되지만 행사가격이 서로 다른 옵션을 매수 (낮은 행사가격의 풋옵션, 높은 행사가격의 콜옵션): 이익은 무제한, 손실은 프리미엄 크기로 제한
버터플라이 (Butterfly) 매도	① 낮은 행사가격과 높은 행사가격의 옵션 1계약씩 매도 + 중간 행사가격의 옵션 2계약 매수 ② 현금의 순유입 발생

■ 장외 통화옵션 전략

- (1) 범위 선물환(Range Forward) : 서로 다른 행사가격의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입·매도 → 매입 옵션과 매도 옵션의 프리미엄이 같게 설계되므로 초기 옵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Zero Cost 전략)
- (2) 목표 선물환(Target Forward) : 선물환율보다 유리한 계약환율로 일정금액을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만기일 환율에 따라 추가로 특정금액을 같은 계약환율로 거래해야 하기 때문에 과대헤지 위험이 있다.
- (3) 프로핏 테이킹 포워드전략(Profit Taking Forward) : 일정한 환율까지는 거래일 선물환율보다 유리한 환율로 거래할 수 있고, 일정한 환율 수준이 벗어나더라도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전략
- (4) 시걸 전략 : 스프레드 전략 가운데 행사가격이 3개인 버터플라이전략처럼 행사가격이 3개인 장외 통화옵션 전략으로 3개의 행사가격을 갖게 되므로 만기일 환율에 따라 4개 구간의 만기손익구조를 가진다.
- (5) 배리어 포워드 전략 : 만기일 환율이 옵션을 거래할 때 정한 배리어에 도달하지 않으면 선물환율보다 유리한 환율로 거래할 수 있지만, 배리어에 도달하면 녹아웃 또는 녹인되면서 불확성이 커지는 전략
- (6) 녹아웃포워드 전략 : 만기일 환율이 녹아웃 배리어(유로파언)에 도달하지 않으면 선물환율보다 유리한 계약환율로 거래할 수 있는 장외통화옵션

꼭 시험에 나오는 핵/심/체/크

2024년 3월 23일(토) 시험대비
외환전문역
1종

이패스코리아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외환전문역 1종 시험정보 ❖

- ▶ 시험 시간 : 10:00 ~ 12:00
- ▶ 합격자발표 : 4월 5일(금)

2024 은행 & 무역자격증 대비반

▶ 외환전문역 응시생 특별이벤트

외환전문역, 유통관리사2급, 물류관리사, 무역영어,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 수강 시 정가대비 50% 할인

→ 이패스코리아 회원가입 후 고객센터 문의등록에 응시내역을 남겨주세요

▶ [은행취빙] 8월 시험대비 AFPK 400% 환급반

• 이벤트 : 3월 말까지 과정 신청시 음료증정

• 구성 : 정규이론+ 문제풀이+핵심요약+모의고사

• 혜택 : 상위권(10위) 합격시 400% 환급, 전체합격 시 200% 환급해드립니다.

은행전문가 패키지 과정

▶ [외환정보] 2024 대비 외환전문역1종 + 2종 패키지

• 1년동안 무제한! & 50% 할인된 가격

• 구성 : 기본서이론 + 문제풀이

• 혜택 : 3주완성 문제집 제공

[교육과정문의] 이패스코리아 1600 - 0522

www.epasskorea.com

1과목 외환관리실무

■ 외국환거래법의 목적

- ①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
- ② 시장기능 활성화 및 대외 거래 원활화(국민경제 악영향이 아니면 규제의 완화 추진)
- ③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촉진 / 국제수지의 균형 / 통화가치의 안정
- ④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외국환거래법 적용 물적대상

- (1) 외국환
- ① 대외지급수단 : 정부지폐·은행·주화(cash)·수표(check,T / C.D / D(demand draft)), 우편환, 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상품권 등
 - ② 외화증권 : 채무증권 / 자본증권, 주권, 법인의 출자증권, 신주인수권이 표기된 것 등 / 수익증권 및 이채 /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 자본시장법상 증권,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 및 ABS 등
 - ③ 외화파생상품 :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
 - ④ 외화채권 :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
- (2) 내국지급수단 :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기타
- (3) 귀금속 : 금·합금·지금·비유통 금화 등 금을 주재료로 하는 가공품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구분

- ① 거주자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회사 모두 거주자, 주민등록 말소 여부 따지지 않음)

국민인 거주자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국민(미국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 국민) • 비거주자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국민 • 그 밖에 영업 상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민
외국인 거주자	•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 국내 입국 후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거주성 유지를 위해서는 출국 후 3개월 이내 재입국 해야 연속성 인정)
단체 등	• 대한민국 재외공관 • 국내에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준하는 조직체

- ② 비거주자 :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이 해당

국민인 비거주자	•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국민 •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민(반기문 사무총장 등) •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그 밖에 영업 상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외국인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 미합중국 군대의 그 구성원·군속 등(초청계약자, 동거 가족 포함)
단체 등	•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및 미합중국 군대 •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회사는 비거주자 • 한국에서 해외로 투자하여 설치한 영업소, 해외현지법인, 해외지사

- ③ 가족의 거주성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 신고사항

신고기관	신고대상
외국환은행	• 연간 5만불 초과지급확인 • 상계, 상호계산, 해외예금, 해외차입, 증권발행, 교포여신, 회원권취득 • 국내부동산취득, 비상장주식취득 • 외국기업국내지사, 원화대출 • 해외직접투자, 해외지사설치, 현지금융, 대북투자 등 •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임대차
한국은행	• 대외지급수단매매 • 상계, 제3자지급, 5만불 초과 본지사수출선수금, 3년 초과 D/A수출 • 개인(사업자)의 해외차입 • 3만불 초과 해외예금, 해외대출 • 역외금융회사 해외직접투자, 등
기획재정부 장관 등	• 3천만불 초과 해외차입 • 해외원화차입(10억 원 초과) • 비거주자원화증권 발행 • 3천만불 초과 증권발행방식 현지금융 등
관할세관	• 여행경비 등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관련 휴대출입국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 금융기관의 해외 사무소 설치

■ 신고수리사항

외국환은행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소유권)-자본거래 일종
한국은행	•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임차권 등 권리취득 시, 해외지사의 제한업무 • 은행신고 이외 해외부동산 취득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설치
금융위원회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 허가사항

한국은행총재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의 이행 또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 등
금융위원회	테러자금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와의 지급 등
기획재정부장관	역외계정과 일반계정 간의 자금이체

■ 계정의 종류 - 외화예금

계정	개설자 등	종류
거주자계정	거주자(외국인거주자의 개인사업자 계정포함)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대외계정	비거주자, 외국인거주자 및 재외공관 직원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해외이주자 계정	해외이주비지급, 재외동포 재산반출 용으로 필요시 개설	당좌예금, 보통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정기적금 ×)
비거주자 외화신탁계정	대외계정과 동일한 성격	금전신탁 모두 가능

■ 비거주자 원화예금

계정	개설자 등	종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포함)가 개설하는 원화계정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비거주자 원화계정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제외)가 국내사용목적으로 원화로만 개설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단, 투자전용계정은 당좌예금, 보통예금에 한함	
비거주자 원화신탁계정	비거주자 자유원계정과 동일한 성격	

■ 대외계정

예치재원	금액제한	확인서류	보고사항	비고
타발송금	없음	없음	없음	-
외화휴대 (현찰, 수표)	2만불 초과시 (동일자, 동일인)	외국환신고(확인) 필증 등 확인, 한국 은행신고필증	없음	외국정부, 공관원, 군대확인제외
원화, 외화	대외지급이 인정 된 자금	대외지급증빙서류 확인	없음	외국정부, 공관원, 확인제외

■ 해외차입신고절차 대비표

차주구분	차입 기간	차입금액	기타조건	신고등기관	비고
영리법인	제한 없음	3천만불 이하	과거 1년간 누계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은행
		3천만불 초과	과거 년간 누계	기획재정부 신고	지정은행 경유
비영리법인 개인 / 개인사업자	제한 없음	제한없음	타인담보 / 보증 포함	한국은행 신고	지정은행 경유
정유 / 액화천연 가스 수입업자	단기	제한없음	수입대금 결제조건 (신용장 송금)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거래 제외
외국인투자 기업	단기	투자금액 100%	고도기술업체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은행
		투자금액 50%	일반제조업체	외국환은행 신고	지정은행

■ 해외직접투자의 신고

해외투자 상담 ↓	• 투자조건 확인(투자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 • 거래여부결정 ① 투자금액 등 확인(일반법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 제한없음) ② 해외에 법인설립 예정인지, 개인사업체 운영인지 파악 ③ 부동산 투자인지, 투자지분은 얼마인지 확인 ④ 금융위원회 신고수리인지,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인지 파악
서류징구 ↓	•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 합작투자서 : 합작계약서
서류심사 ↓	• 투자내용과 일치 여부 판단 • 신용관리 대상자인지 여부 판단 / 해외이주수속 종인지/ 조세체납자 여부
신고서교부 ↓	• 거래외국환자정 • 신고필증교부(유효기간신고일로부터 1 년)
투자실행 ↓	• 해당지정은행에서 신고해야 함 • 1년 이내에 투자완료하여야 함(3개월 이내 30일까지지만 연장 가능)
내용변경 신고	투자지분감액, 투자지분양도, 유효기간연장, 현지법인의 회사사 손회사 설립 시 내용변경신고를 해야 함

2과목 외환관리실무

■ 환거래은행 - 환거래계약을 체결한 은행

예치환 거래은행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상대방은행에 자기명义的 예금계좌 (당방계정)를 개설한 환거래은행
무예치환 거래은행	자기명义的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단순히 계약만을 체결한 환거래 은행
당방계정	외국환은행이 상대방은행에 개설한 자기명义的 예금계좌
선방계정	상대은행이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예금계좌

■ 유동성리스크 관리 - 유동성리스크 측정

- 외화유동성 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외화부채에 대한 외화자산의 비율
 - 감독기관의 지도비율은 85% 이상
- 만기불일치 비율
 - 외화자산 만기와 외화부채 만기의 불일치 비율
 - 잔존만기 1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이 10%를 넘지 않도록(만기불일치 비율 : -10%) 관리
- 중장기 외화자금조달 비율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외화대출 재원은 상환기간이 1년 초과인 외화자금으로 관리하는 지표
 - 감독기관의 지도비율은 100% 이상
- 유동성갭
 - 정태적 유동성갭 : 자산·부채의 약정만기에 따라 만기사다리의 만기구 간에 약정 원금의 현금흐름을 배분하고 유동성갭과 유동성갭비율을 산출하는 방식
 - 동태적 유동성갭 : 정태적 유동성갭에 고객행동 시나리오를 반영하여 산출하는 방식
 - 유동성 시나리오별 유동성갭 : 정상적인 시장상황, 당해 금융기관의 위기상황, 전체 시장의 위기상황 등의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유동성갭을 산출하는 방식
 - 유동성 위기상황 계획
 - 위기상황시나리오설계
 - 비상조달계획

■ 환 포지션의 형태

포지션구분	상태	환위험
Square Position	외국환매입 = 외국환매도	환리스크 없음
Over Sold Position (매도초과 포지션)	외국환 매입 < 외국환 매도	환율 하락 시 환차익
Over Bought Position (매입초과 포지션)	외국환 매입 > 외국환 매도	환율 상승 시 환차익

■ 환 포지션의 산출

- 종합포지션
 - 현물매매와 선물매매를 포함한 은행의 전체 포지션
 - 환리스크 제거를 위해 종합포지션을 Square Position으로 관리해야 함
- Actual 포지션 : 종합포지션에서 선물매매분을 제외한 포지션
- Cash 포지션 : Actual 포지션 중에서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환 포지션을 제외한 포지션(언제든지 외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지션만을 의미)

■ 여행자수표(T / C, Traveler’s Check)

- 여행자수표 발행회사가 발행한 정액권 외화수표
- 여행지 코레스(Corres)은행을 통해 현금으로 교환 가능
- 도난 및 분실 시에도 T / C구매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면 재발행이나 환금이 가능
- 국내 외국환은행은 Amex 등 발행회사와 판계약을 맺고 여행자수표를 대리하여 발행

■ 외화수표의 종류

- 은행수표(Banker’s Check)
 - 환거래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서명권자가 은행인 수표
 - 환거래은행이 아닌 은행이 발행한 수표는 서명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 수표에 준해 취급
- 머니 오더(Money Order) : 수표발행 신청인이 수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수료를 은행 또는 발행회사에 지불하면 발행해주는 수표
- 국고수표(Treasury Check) : 재무성이 발행하는 수표, 유효기간은 1년, 추심이 불가 하고 매입거래만 가능
- 여행자수표(Traveler’s Check) : 현찰과 거의 동일하게 사용, 정액화된 수표, 고객입장에서 환율(여행자수표매도율)이 현찰보다 낮아 유리
- 개인수표(Personal Check) :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는 예금주가 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수표(당좌수표와 유사), 추심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경과계정과 결제계정

경과계정 (Tunnel a/c)	외국환은행이 화계처리 절차상 어떤 거래의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결제계정	결제를 위해 외국환거래가 최종적으로 귀착되는 계정	
구분	차변	대변
경과계정	매입외환	매도외환
	미결제외환	미지급외환
결제계정	외화타점예치금(Our a / c)	외화타점예수금 (Their a / c)
	외화본지점	외화본지점
	(inter-office a / c)	

■ 경과계정의 종류

구분	거래내용	환종류	계정과목	비고
수출거래	수출환어음 매입	매입환	매입외환	
수입거래	수입선적서류 접수	추심환	미결제외환	신용장 방식
당발송금거래	T/T, 외화수표 발행, T/C판매	매도환	매도외환	
타발송금	거래타발송금환의 지급	지급환	미지급외환	

3과목 환리스크관리

■ 외환거래를 위한 전문용어

- Pip : 달러 / 원, 달러 / 엔 - 소수점 둘째자리고시, 유로 / 달러, 파운드 / 달러 소 수점 넷째자리까지 고시
- Big figure : 10⁶ 단위 Pip 이상에 숫자(offered rate가 1.2640인 경우 1.260이 Big figure)
- Firm price : 어떤 은행이 외환거래를 위해 브로커에게 주문을 접수했거나, 두 은행 사이의 장외거래에서 Quoting Party가 고시한 환율로 Calling Party가 거래의 의사만 표시하면 거래할 수 있는 환율율
- Two - way Quotation
 - 달러인 은행은 실제 외환거래에 있어서 항상 매수율(bid rate)와 매도율(offer rate)에 차이를 두어 제시함
 - 이 매수율과 매도율을 동시에 고시하는 것을 Two - way Quotation이라고 함
 - 매수율과 매도율의 차이를 스프레드(spread)라고 함
 - Calling Party에게 스프레드는 비용
 - Quoting Party에게 스프레드는 수익

■ 환리스크의 유형 ★★★

회계적 환리스크	거래 환리스크	① 환율변동 이전에 발생한 계약을 환율변동 이후에 실행함으 로써 최종적으로 지급하거나 수취할 금액이 불리하게 실현 될 가능성 ㉠ 무역거래 ㉡ : 환율이 1,000원일 때 대당 1달러에 100개 수입 하기로 계약, 결제시점에 환율이 1,100원이 된다면 11만원을 지급해야함 ㉢ 자능거래 ㉣ 외화자금 차입시점 환율 ≠ 상환시점 환율
	환산 환리스크	결산시점에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의 가치를 환율변동을 반영 하여(즉, 환산하여) 장부에 표기하려 할 때 환산차익이나 환산차 손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
경제적 환리스크	영업 환리스크	①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 → 원가, 판매가격, 판매량 등이 영업 에 영향 → 현금흐름 및 영업이익이 변동하게 될 가능성 ② 사전에 노출 정도를 알기 어려우며, 대부분 기업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나 사실 가장 큰 환리스크임